

이내에 2개월이상 있는 경우에는,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해당 결산기간 평균잔액 2백만원 미만 구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이때 제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가. 공적연금 :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

나.개인연금: (구)외환은행의 연금지급식 상품(예금,신탁,펀드)에서 입금되는 연금

다. 퇴직연금: (구)외환은행의 퇴직연금에서 입금되는 연금

라. 주택연금 : (구)외환은행의 주택역모기지론 상품에서 입금되는 연금

마. 입금내역이 연금성 자금으로 전산상 자동 인식되는 경우

④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또는 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전환한 계좌인 경우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해당 결산기 최초 보유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9조 수수료면제 서비스의 제공

① 아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 1,2조항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구분	제공조건
입금실적	<u>전월 또는 전전월에 이 통장으로 연금 또는 급여(주1)를 받거나, 전월에 고객이 지정한 특정일 전후 2영업일내 건별 50만원이상 입금된 경우</u>
카드실적	전월에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</u>
주거래	생략
공과금	전월 이 통장에 각종 <u>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이 2건 이상</u>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 를

3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있는 경우에는,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해당 결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2백만원미만 구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이때 제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1.공적연금 :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사학연금, , 군인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

2.개인연금 : KEB하나은행의 연금지급식 상품(예금,신탁,펀드)에서 입금되는 연금

3.주택연금: KEB하나은행의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에서 입금되는 연금

4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 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

④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9조 수수료면제 서비스의 제공

① 아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 1,2조항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구분	제공조건
입금실적	<u>전월에 이 통장으로 제8조 ③항의 연금이 입금되거나 급여(주1)를 받는 경우</u>
카드실적	전월에 이 통장에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</u>
주거래	생략
공과금	전월 이 통장에 각종 <u>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2건이상</u>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 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

행명 변경,

퇴직연금 삭제

기타연금 조항 변경, 산재보험 추가

상품전환시 금리적용 문구변경

연금,급여 기준 변경

카드사용실적 -> 결제실적

공과금 자동이체등록 -> 자동이체 출금실적

<p>아파트관리비</p>	<p>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 <u>전월 또는 전전월에</u> 이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</p>	<p>아파트 관리비</p>	<p><u>전월에</u> 이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</p>	<p>아파트관리비 실적기준 변경</p>
<p>(주1) 연금,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(생략, 변경전 약관 참조)</p>		<p>(주1) 급여 인정기준 (생략, 변경후 약관 참조)</p>		<p>급여인정기준 변경</p>
<p>② 우대서비스 1 : ①항의 제공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 - 전자금융^(주2)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<u>외환은행</u>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- <u>다른은행 CD/ATM^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</u></p>		<p>② 우대서비스 1 : ①항의 제공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 -전자금융^(주2)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<u>KEB하나은행</u>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- <u>다른은행 CD/ATM^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(월10회)</u></p>		<p>행명 변경 수수료면제 횟수제한 신설</p>
<p>③ 우대서비스 2 : ①항의 제공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 - 전자금융^(주2)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<u>외환은행</u>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출금 수수료 - 다른은행 CD/ATM^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 -<u>외환은행</u>CD/ATM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</p>		<p>③ 우대서비스 2 : ①항의 제공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 -전자금융^(주2)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<u>KEB하나은행</u>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 수수료 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 - <u>KEB하나은행</u> CD/ATM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- 다른은행 CD/ATM^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-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 (단, 우대서비스 2 의 "다른은행 CD/ATM 출금수수료 및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" 는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)</p>		<p>행명 변경 수수료면제 횟수제한 신설</p>
<p>④ ~ ⑤ (생략)</p>		<p>④ ~ ⑤ (좌동)</p>		

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(구 외환은행) 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(개인사업자 불가)

제4조 상품명

이 예금의 상품명은 "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" 또는 "119생명지킴이 통장"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.

제5조 가입제한

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6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7조 가입기간

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8조 이자

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가산합니다.

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, 6, 9, 12월 제3금요일

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
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
1.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

2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

③ 이 통장에 매 결산일이 속한 달의 전월(2월,5월,8월,11월)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아래 연금종류 수급실적이 과거 3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있는 경우에는,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해당 결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2백만원 미만 구간에 대하여

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이때 제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1. 공적연금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
2. 개인연금 : KEB하나은행의 연금지급식 상품(예금, 신탁, 펀드)에서 입금되는 연금
3. 주택연금 : KEB하나은행의 주택역모기지론 상품에서 입금되는 연금
4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

④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9조 수수료 면제서비스의 제공

① 아래 '제공조건' 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 1,2 조항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구분	제공조건
입금실적	전월에 이 통장으로 제8조 ③항의 연금이 입금되거나 급여 ^(주1) 를 받는 경우
카드실적	전월에 이 통장에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
주거래	전월 이 통장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공과금	전월 이 통장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 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
아파트 관리비	전월에 이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

(주1) 급여 인정기준

급여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 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 ● 최소 건당 50만원 (단, 협약에 따른 군.전의경 급여는 금액 기준없이 인정)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 다음의 경우 제외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) 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 ● 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●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

② 우대서비스 1 : ①항의 제공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

- 전자금융^(주2)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(주2)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
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
- 다른은행 CD/ATM^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(월 10회)
(주3) 은행점포내 CD/ATM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한함
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

③ 우대서비스 2 :

①항의 제공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아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해 제공)

- 전자금융(주2)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
- 납부자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수수료
- KEB하나은행 CD/ATM 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- 다른은행 CD/ATM(주3)을 이용한 출금수수료
-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

(단, 우대서비스 2 의 “다른은행 CD/ATM 출금수수료 및 창구송금수입수수료(타행환)” 는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)

④ 제공방법 : 제공조건별 충족월 다음달에 우대서비스 제공

⑤ 우대서비스 특례 : 최초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'우대서비스 1, 2'를 제공합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약관은 201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)

이 약관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)

이 약관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3)

이 약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4)

이 특약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5)

이 특약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6)

① 이 특약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특약 변경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.

부칙 (7)

이 특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(경과조치) 변경시행일 이전 가입한 고객의 연금수급실적 우대금리는 시행일이후의 연금수급실적 유무에 따라서 적용합니다.

부칙 (8)

이 특약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 (9)

이 특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며, 기 가입고객은 변경 시행일 이후 제공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우대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부칙(10)

이 특약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 (11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